

의안번호	2205165
의 퇴 인	박용갑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9.
추계번호	24C4734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추계결과,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와 폭력 피해 실태를 2년 주기로 조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억 2,800만원(연평균 6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사회복지사 보수·지급 실태조사 및 폭력 피해 실태조사(안 제3조)	228	△178	228	-	50	328	6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실태조사)	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과 폭력 피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2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함 ※ (현행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)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·공표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의2(실태조사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재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, 추가로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기존 사회복지사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폭력 피해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으나, 본 추계서는 보수 등에 관한 실태와 폭력 피해 실태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실태조사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지역별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현행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와 마찬가지로 폭력 피해 실태조사 역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
- (사회복지사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)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 소요재정(1억 7,800만원)을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현행법 유지 시 차기 및 차차기 실태조사는 2026년과 2029년에 실시되어야 하나, 개정안 시행 시 차기 실태조사는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(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조사)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「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」의 연구용역비 단가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- 보건복지부는 2021년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에 대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「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」를 실시(5천만원 소요)
 -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□ 추계결과,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와 폭력 피해 실태를 2년 주기로 조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억 2,800만원(연평균 6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사회복지사 보수·지급 실태조사 및 폭력 피해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사회복지사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조사(A = b - a)	178	△178	178	-	-	178	36
현행법 유지 시(a)	-	178	-	-	178	-	-
개정안 적용 시(b)	178	-	178	-	178	-	-
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조사(B)	50	-	50	-	50	150	30
추가재정소요 합계(A + B)	228	△178	228	-	50	328	6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